

임금협정서

2017년도

임금협정서

서울택시 노사양측은 그동안 구축된 노사관계를 존중하면서 최근 날로 심화되고 있는 택시의 교통환경과 경제적 난관의 현실이 노·사 모두에게 존립을 위협하는 실정에 처해 있다는 위기를 노사 모두가 깊이 인식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위기극복과 발전적 근로환경개선을 노사 공동으로 추진하며 이를 개선하는 데는 제도의 시행에 유연성을 발휘하여 공존공생의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소속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차량가동율을 높이는데 노사가 혼연일체되어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월급제를 기반으로 한 임금협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기본방침)

① 임금제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 임금협정서에서 현행 1일 2교대시 월 급여산정을 위한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은 130,500원을 기준액으로 지향하고, 각 단위사업장은 운송수입금기준액 현행에서 1인 1일 5,000원을 인상하여 실시한다. (노사 양측은 향후 서울택시가 동일임금, 동일기준금이 되도록 노력한다.) 임금은 기타수당을 신설하여 26,000원을 지급한다.(총액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36,558원 인상)

(가) 정액급여 임금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나) 성과급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 초과금액이 발생할 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노사가 6 대 4 (노60% : 사40%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단, 월 소정근로일수가 미달하여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시는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1일 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며 또한 승무일수별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액에 대하여 (나)항의 배분산식에 의거 일할 정산한다.

② 운송수입금 납입관리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①항에 근거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의 전부를 납입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터기상의 금액에서 허수의 수입금인 '로스'를 제외한 금액) 다만, 노사는 월 정액급여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기준액의 책임수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원칙에 따라 영업수입금의 불성실 방지 및 월 임금산정의 기준을 기하기 위한 월 및 1일 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은 책임 납입하여야 하며 각 사업장별 월과 1일의 기준액과 임금은 각 단위사업현장의 현행으로 한다.

③ 회사는 소정의 근로시간 이외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도 없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이내에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납입을 하여 책임을 다했을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구애 없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완수된 것으로 규정하고 차량을 근로자가 자의적 사용(私用)(개인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운행하다가 간혹 수입금이 발생하였더라도 회사는 납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의 자의적인 개인수입으로서 회사는 관리 및 지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납을 강요할 때는 사용자측에서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로서 회사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단, 장거리운행(손님을 승차하고 영업한 경우)등을 비롯한 심야 또는 새벽에 다음 순번 교대자 수송을 위해 운행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와 근로자가 영업 활동상 메타기 오작동 및 운임 미수수 등의 로스(loss)와 승무원의 품위 유지상 불가피한 비용과 휴식 시간대의 주차비 및 운행중 차량청결을 유지키 위한 간이 세차비 등으로 인한 제비용 등을 감안하여 메타기에 표시된 총 금액에서 18%-25% 범위 내에서 부족한 분은 추궁하지 아니하나, 제7조 4항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라도 월 및 1일 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은 책임 납입하여야 하며 하회할 수 없다. 간혹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액은 회사가 확인할 수도 없고 또한 기록장치에 표시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료 교대기사를 승차시키고 메타를 작동시켜 운행시 발생하는 표시 금액 등과 오작동으로 발생한 금액 등이므로) 그 금액은 회사가 확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납할 경우는 제규정상 위반행위이며 또한 관리 및 지배 불가능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운전자 개인수입으로 직접 귀속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정하지 아니 하며 근로자는 일체의 근로의 대가로 청구하지 못한다.

- ④ 노사는 공동의 노력으로 택시 교통환경 및 경제여건개선의 총력과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

(가)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택시요금인상 각종 세제감면 등의 재원확보를

통하여 직업의식과 자랑스러운 택시 근로자상을 이루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직업인으로 자리를 잡는다.

(나) 상기 (가)항의 여건조성은 점진적으로 임금인상과 후생복지 증진을 이루어 타산업의 평균임금수준 4인 가족 도시생계비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 서울시내버스 중앙차로에 택시가 승객을 태웠을 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차량의 청결을 비롯 운전자의 복장과 근무자세 및 승객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여 시민으로부터 환영받는 택시를 만든다.

⑤ 근로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사 공동 노력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이루어 요금인상에 따르는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며 사회로부터 선망의 직종으로 터전을 마련하여 인력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공동의 발전을 기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정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주) 노동조합,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주) 분회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근로형태)

노사는 근로형태를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간근로일수를 오전, 오후로 균등하게 배차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에 의거 격일제 근무도 할 수 있다.

또한 노사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시 택시발전모델에서 발표된 리스제도 할 수 있다.

제4조 (근로시간)

- ① 근로시간은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1일 배차(출고후 입고까지)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을 제외한 시간, 즉 4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한다.

- ② 노·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 도로를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 형태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私用)의 시간으로 하고, 초과(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 (근로일수)

월 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26일 만근으로 한다.

단, 2월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한다.

제6조 (임금체계와 구분)

- ① 운전자의 임금구성은 정액급여(기본급+제수당+상여금) 또는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 ② 임금산정내용은 별표#1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를 참고하여 단위사업장별로 산정한다.

제7조 (성실근로 의무)

- ① 운전자는 회사의 승무계획에 의한 순번승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차량 내외 청결과 일상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승객의 안전수송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승무한 운전자는 영업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의 전부를 회사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무일수에 비례한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책임 납입하여야 한다.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유용)할 경우와 운행기록장치 출력기록상 운행상태가 불량할 경우 및 불성실 영업행위(부당요금징수, 메타기 미사용, 메타기 조작 및 파손, 승객으로부터 민원발생자)가 있을 경우와 1일 소정근로시간 미달 등은 1차 경고하고 그래도 재차 개선의 정이 없을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의뢰 받은 일상정비와 고장정비, 사고시 수리, 적절한 세차 등을 통해 기본적 택시근로환경 개선을 철저히 이행하여 항시 운행 가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제반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되고,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운전자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 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전자가 입금한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정상근무인정(제11조)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을 미달하였을 경우 합당한 사실이 확인될 시는 임금(월급)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 ⑤ 조합원별 운송기록 출력장치에 의한 운전자별 자신의 월간운송수입금 현황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결근통보)

- ① 운전자가 질병 또는 부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시업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신청한 후 회사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 ② 운전자가 갑작스런 발병 및 부상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연락하여 배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후 24시간 이내에 회사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제9조 (결근사유의 증빙)

운전자가 업무외로 위 제8조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질병 및 부상 등으로 회사의 승인을 득하는 결근시 6일까지는 의사의 소견서, 1주일 이상은 의사의 진단서, 신체구금(교통사고에 한함)의 경우는 구금처의 확인서 등으로 결근사유를 증빙해야 한다.(회사가 지정한 병원으로 한다)

제10조 (결근처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한다.
-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결근사유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와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허위증빙시 무단결근 처리한다.

제11조 (정상근무인정)

다음의 경우 각항 규정은 단위사업장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1. 단체협약서상 휴일, 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2. 배차시간 중 민방위 교육,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을 때(4시간 이상은 1일 인정, 4시간 미만은 소요시간인정)
3. 배차시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공민권 행사로 승무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소요시간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받을 때(4시간 이상은 1일 인정, 4시간 미만은 소요시간인정)

제12조 (주휴일 지정)

주휴일 지정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며 운전기사 개개인별로 회사가 별도 지정한 날로 한다.

제13조 (휴직에 대한 임금처리)

운전자가 질병으로 15일이상 입원한자만 14일분 기본급을 지급한다.
단, 기타사항은 단위 사업장 노사협약에 준한다.

제 2 장 기본급 및 제수당

제14조 (기본급)

- ① 기본급은 월 167시간, 1일 5시간 30분을 기준하여 산정하고 이에
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근무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수습 사용중인 자와 월중 입사자와 퇴사자, 운전면허(자격정지)

정지처분자, 무단결근자, 제13조에 준한자 등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일할 정산한다.

※ 산식 :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기본급 1일분 = 기본급 ÷ 30(일)

- ② 업무상 피해사고로 인한 부상, 입원 및 요양가료 중 일 때에는 기본급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법 및 보험업법에 의하여 휴업급여액 및 휴업손해액을 수령할 시는 부족액만을 지급한다.

제15조 (근속수당)

- ① 근속수당은 2011년 협정 시행 이전 현재 재직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월 35,720원을 지급하고 1년 초과 시마다 17,860원을 가산 지급하며, 16년까지만 적용한다.
- ② 2011년 협정 시행일 기준 이후 입사자는 정액호봉 수당으로 신설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속자부터 매 3년 단위로 1호봉씩 승급하고, 최대 4호봉(10년 이상)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이 호봉수당으로 지급한다.
- 1호봉(1년이상 4년미만) : 월 30,000원,
2호봉(4년이상 7년미만) : 월 50,000원,
3호봉(7년이상 10년미만): 월 70,000원,
4호봉(10년이상 ~) : 월 90,000원

제16조 (승무수당)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7조 (기타수당)

기타수당은 월 26,000원을 지급한다.

제 3 장 성 과 급

제18조 (성과급의 정의)

성과급은 승객의 안전수송과 서비스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수입금 실적에 따라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제19조 (성과급 산정)

① 배분은 노(60%), 사(40%) 비율로 배분한다.

② 성과급 산식

가. 월26일 승무시

$$\text{성과급} = (\text{월간총수입금} - \text{누계액} - \text{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times 60 / 100$$

나. 월중입·퇴사자 및 26일 승무 미달자

$$\text{성과급} = \left[\text{월간총수입금} - \text{누계액} - \{ (\text{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div 26 \text{일}) \times \text{월간승무일수} \} \right] \times 60 / 100$$

③ 제1조 ③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 이상의 초과입금이 발생하여 회사에 납입할 때는 회사는 이를 수납하여 일별 또는 월별로 본인에게 배분 지급할 경우에는 제19조 ①항, ②항 규정을 적용하나 만약, 회사 배분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운전기사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동40%의 금권은 근로자 배분 60%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간접비, 퇴직금 등에 충당할 금원인바 후일 퇴직금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시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초과입금 40%(회사 배분)는 초과입금 60% (근로자 배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의 선(先)가지급

금 규정으로 확정하고 초과입금(60% : 40%)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요구시 선(先)가지급금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상 여 금

제20조 (상여금의 지급조건과 기준)

상여금은 1년이상 근속하고

1.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350만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2. 해당월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자(1, 2항)에 한하여 현행 정률지급제도의 금액을
고정하여 3단계의 현행 지급조건인 근무일수를 23,24,25,26일로
기준하여 매월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별표#1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
예시표에 따른다.

제 5 장 부 칙

제21조 (연료 공급)

회사는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를 전량 지급한다.

제22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 2018년 3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23조 (경과조치)

- ① 본 협정의 변동사항 중 단체협약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임금 부분에 한해서는 본 협정이 우선한다.
- ② 본 협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각 단사의 현행에 따른다.

제24조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은 관련법을 따른다.

제25조 (보조금 지급)

사용자는 신규입사자에 한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운행 숙달 보조금으로 1년 미만자는 1년이 되는 시까지 300,000원을 12개월로 분할 매월 만근한 자에게 25,000원씩 지급한다.

제26조(부가가치세 감면분 월 선지급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②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분 월 선지급금은 155,461원으로 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전액 지급한다.

제27조 (협정서의 작성 보관)

본 협정서는 3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회사(사업장) 노동조합대표가 각각 서명 날인 한 후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17년 3월 14일

【별표 # 1】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

☐ 1년미만, 월 26일 근무시

구 분		월 지 급 액	산 출 근 거
기 본 급		745,639	$745,639 \div 167H = 4,464^{.90}$
제 수 당	승 무 수 당	305,711	$11,758^{.12} \times 26\text{일}$
	근 속 수 당		
	야간근로수당	116,088	$4,464^{.90} \times 4H \times 0.5 \times 13\text{일}$
운행숙달 보조금		25,000	
	기타수당	26,000	
임금 총액		1,218,438	(인상액 : 36,150원)

부가세 감면분 선지급금	155,461	
총 계	1,373,899	

통 상 임 금 (시 급)	기 본 급	$745,639 \div 167H =$	$4,464^{.90}$
	계		$4,464^{.90}$

【별표 # 1】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

☐ 1년이상 2년미만, 월 26일 근무시

구 분		월 지 급 액	산 출 근 거
기 본 급		745,639	$745,639 \div 167H = 4,464^{90}$
제 수 당	승 무 수 당	305,711	$11,758^{12} \times 26\text{일}$
	근 속 수 당	30,000	
	야간근로수당	120,758	$4,644^{54} \times 4H \times 0.5 \times 13\text{일}$
합 계		1,202,108	
상 여 금	월근무일수 23일 이상	158,909	
	월근무일수 24일 이상	184,561	
	월근무일수 25,26일 이상	210,213	
기타수당		26,000	
임금 총액		1,438,321	(인상액 : 36,558원)

부가세 감면분 선지급금	155,461	
총 계	1,593,782	

통 상 임 금 (시 급)	기 본 급	$745,639 \div 167H =$	$4,464^{90}$
	근 속 수 당	$30,000 \div 167H =$	179^{64}
	계		$4,644^{54}$

노 조 측

교섭위원장
(신화여객분회 위원장)

김 동 현

위원(삼이운수분회 위원장)

손 재 현

위원(유창상운분회 위원장)

위원(강북운수노조 위원장)

김 광 선

위원(조흥택시분회 위원장)

정 동 영

위원(영도상운노조 위원장)

김 대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의장

강 신 복

사 용 자 측

교섭위원장
미동운수(주) 대표이사

최 희 철

위원(동화운수(주) 대표이사)

김 지 영

위원(신영산업운수(주) 대표이사)

정 일 한

위원(재우교통(주) 대표이사)



최 태 영

위원((주)대성택시 대표이사)

김 창 모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 사 장

문 홍